

(재)서울디자인재단 - (주)동아TV 미디어활성화 업무 협력

협약서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서울디자인재단”)과 (주)동아TV(이하 “동아TV”)는 양 기관 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서울패션위크 경쟁력 강화와 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의 통합적 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이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디자인재단”과 “동아TV”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서울패션위크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준수하며, 양 기관의 제반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동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협력사항)

본 양해각서를 통한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가. “동아TV”는 라이브 송출 및 방송을 위하여 서울패션위크 컬렉션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 나. “동아TV”는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송출”을 지원한다.
- 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패션위크 미디어활동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편의사항을 제공한다.
- 라. “서울디자인재단”은 제작 콘텐츠 및 “동아TV” 홍보활동에 협력하며 진행 행사 홍보물에 대하여 로고 노출, 지면광고 등의 홍보 혜택을 지원한다.
- 마. 기타 지속 가능한 협력에 필요한 활동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 바. “동아TV”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영상 2차 가공 시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한다.
- 사. “동아TV”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 아. “동아TV”는 촬영 영상 판매시 “서울디자인재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자. 영상 전달 방식 및 시간은 서로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준수사항)

“동아TV”는 “서울패션위크” 미디어활동에 대하여 “방송후원사”의 자격을 갖는다. 이에 “서울디자인재단”은 동종분야 및 동종업계 방송사업자와 “라이브 송출”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 (분쟁해결)

1.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 의하여 해결한다.
2. 본 협약서는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보안)

양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본 협약서 효력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의 의무는 유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사전 상호 협의한 사항은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협약내용의 개정)

1. 제2조(협력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내용의 삽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협약의 시행에 있어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효력 및 해지)

1.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협력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종결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3.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

양 기관은 위와 같이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며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2. 06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주)동아 TV
대표이사 김 인 권
